

대한상의 브리프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허난이 연구위원(법학박사)



제105호 2019년 9월 16일



최근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무역규범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의 개념과 현재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하는 바를 모색해보았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규범의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올 7월 프랑스 상원은 디지털 사업 매출액이 전 세계 7억 5,000만 유로, 프랑스 국내 2,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국내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미국이 관세 보복을 경고하면서 양국 간 무역 분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IT 공룡’으로 불리는 미국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세가 ‘불공정한 무역’에 해당하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이 확산됨에 따라 이차림 개별 국가 단위의 보호무역조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한 분쟁이 우려되는 만큼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

CTAD)에 따르면 글로벌 기준으로 2014년 22조 1,000억 달러 규모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2016년 27조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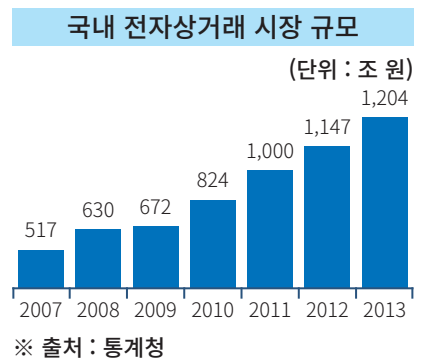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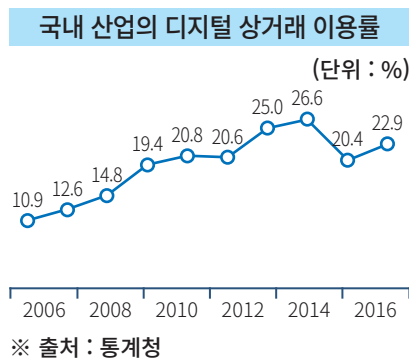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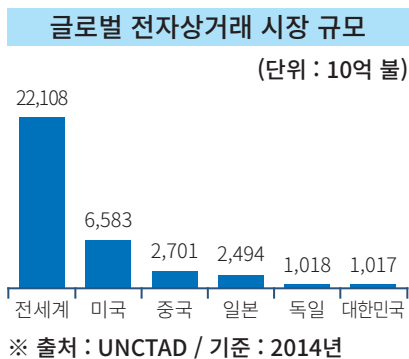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22년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신흥 시장(Emerging Market) 규모가 약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에 의한 교역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무역’의 개념

협회의 디지털 무역이란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이용해 상품 혹은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하지만 광의의 개념은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의 핵심인 데이터 이동을 기초로 하는 국가 간 교역활동 전반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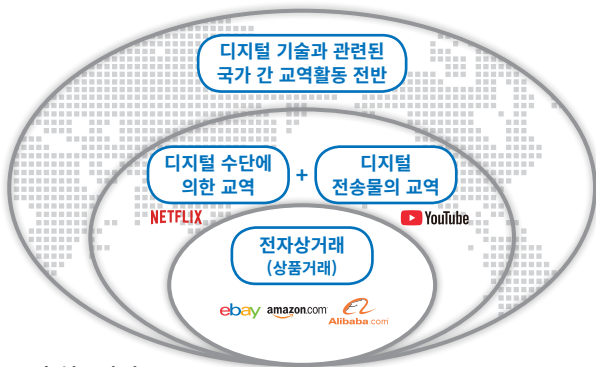


[디지털 통상 규모]





[디지털 무역의 범위]



※ 출처 : 산업부

무역의 디지털화는 다양한 효과를 낳고 있다. 먼저 무역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WTO는 지난 1996년부터 2014년까지 15%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재화가 탄생하고, 국제적으로 거래됨으로써 경제성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없던 데이터 교역 등 무역패턴 변화도 만들어 내고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의 핵심 쟁점

디지털 무역규범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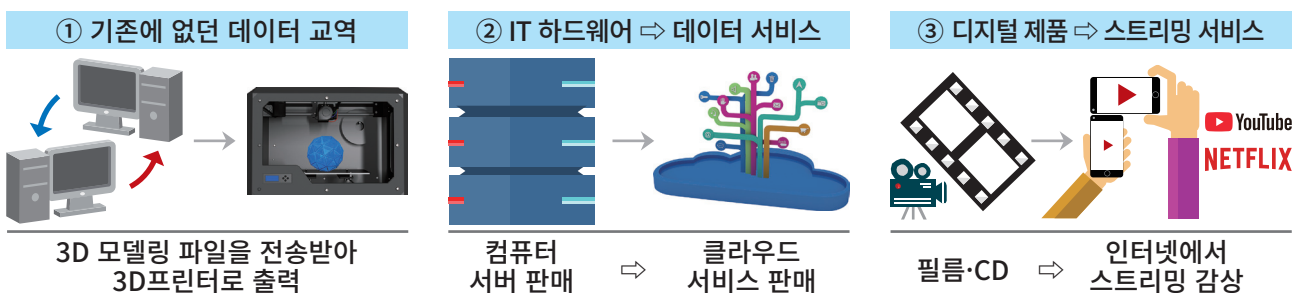
첫 번째는 새로운 무역대상이 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다. 전자적 전송물은 전통적인 수입통관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1998년 WTO 각료회의 선언에서 한시적 무관세화가 채택된 바 있고, 일몰 연장을 통해 계속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일부 개도국도 있는 만큼 무관세 영구화에 대해 논의가 남아 있다.

둘째, 소비자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의 자유화 여부이다. 소비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미국은 자유로운 이동(예외는 인정)을 주장하는 반면, EU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정하여 유럽경제지역 31개국 간 데이터 이전은 자유롭지만, 제3국 이전 시 적절성 평가를 통과해야 자유로운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EU 거주자의 정보를 모니터링만 해도 GDPR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와 소스코드 공개 문제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에서도 논란이 되는 것으로 미국, EU 등 다수 국가는 데이터 현지화와 소스코드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역내 데이터 저장과 소스코드 공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6년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불허한 바 있다.



[변화되는 무역패턴]



※ 출처 : 월간통상 (2019. 7월)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디지털 무역규범 관련 주요국 입장]

국가	주요 입장
美	·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 외국 정부의 규제 최소화 집중
EU	·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에 민감 · 역내 단일화 시장 추진 중
中	· 독자적인 시장 및 규제체계 유지 · 대외적인 규범에 대한 관심 미미

※ 출처 : 저자 정리

이러한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다.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에게는 데이터를 다루고 이전하는 데 국가마다 상이한 규정이 있을 경우 글로벌 비즈니스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협상 동향과 도입 현황

WTO 도하라운드 가 표류하면서, 디지털 무역에 대한 다자간 국제규율이 부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17년 12월 제11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등 71개국이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를 시작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19년 5월부터 WTO 공식 협상이 시작됐다.

다자체제에서의 성과가 미미한 가운데,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하여 관련 규범을 도입하고 있다. 다자체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으로 합의가 어려웠던 사안들이 양자나 복수국 간 협상으로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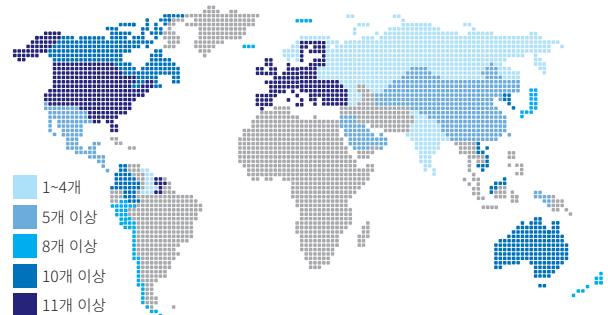
특히, 미국이 협상을 주도한 미-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EU 또한 전자상거래 규범을 포함한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했다.

미국 주도의 협정은 데이터를 다루는 컴퓨팅 시설의 현지화 의무 부과를 금지한 반면, EU가 주도한 EU-일본 EPA의 경우 모범관행 및 규제 협조 조항을 만들어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체결 FTA에서 전통적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규범을 적극 수용했으나,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에 관한 규범 도입 사례는 미미했다. 한-미 FTA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관한 협력 조항만 포함됐다.



[국가별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을 담은 지역무역협정의 수]



※ 출처 : KIEP (2019)

WTO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는, 높은 수준의 타결이 이상적

우리나라는 WTO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협상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효과]

구 분	낮은 수준		높은 수준	
	전체	복수국	전체	복수국
GDP(%)	0.14	0.11	0.90	0.69
후생(억\$)	2,882	2,238	19,209	12,376

※ 출처 : 서울대 김수욱 교수 (2019)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체 참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복수국 협상에서라도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우리 정부의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우리 산업의 이익을 반영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의 선제적 대응, 둘째, 다자·양자간 통상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시장확대 지원, 셋째, 글로벌 디지털 통상 이슈 주도, 넷째, 디지털 통상 기반 강화 및 국내 제도 선진화이다.

그중에서 시급한 과제는 국내 제도 정비다. 지금 미국은 다소 이견은 있지만 EU, 일본 등과 새로운 디지털 무역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데이터 정책 및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내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데이터 규제완화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

① 우리 산업의 이익 반영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선제적 대응

- 우리 기업의 경쟁력 반영한 <디지털 통상 협상 방향> 마련
- 다자·양자간 통상 협상에 우리 이익 반영

② 글로벌 디지털 통상 이슈 주도

- 거대 글로벌 플랫폼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 디지털 권리침해 방지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다자·양자간 통상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시장확대 지원

- Digital Alliance 구축
- 전략국가-유망산업 매칭 협력사업 추진

④ 디지털 통상 기반 강화 및 국내 제도 선진화

- 통계 확보 및 업계 공동대응 네트워크 구축
- 국내제도 선진화 지원

※ 출처 : 산업부

아울러 데이터 현지화 조치 등의 규범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과 논리도 개발해야 한다. 데이터 현지화는 유치산업 보호나 직접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어떤 방향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시사점

디지털 국제규범은 IT분야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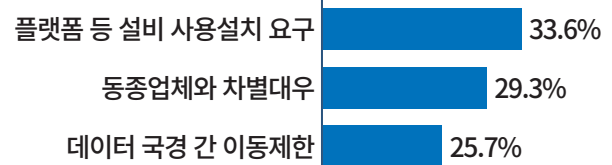
먼저 우리 기업들은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해당 국가 내 현지 플랫폼/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설치 요구’를 꼽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은 데이터 저장 설비의 공동 구축이나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디지털 국제규범이 확립되기 전에 각 국가가 새로운 비관세 장벽을 시행할 수 있어, 정부와 협력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국제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규범 논의와 관련한 기업 의견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도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디지털 통상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 출처 : 한국리서치 (2019)

국내·외 경제지표

2019년 9월 16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7	2018 ^(E)	IMF		OECD	
			2019 ^(P)	2020 ^(P)	2019 ^(P)	2020 ^(P)
한국	3.1	2.7	2.6	2.8	2.4	2.5
세계	3.7	3.6	3.2	3.5	3.2	3.4
미국	2.2	2.9	2.6	1.9	2.8	2.3
중국	6.8	6.6	6.2	6.0	6.2	6.0
일본	1.9	0.8	0.9	0.4	0.7	0.6
EU	2.5	1.8	1.3	1.6	1.2	1.4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6	2017	2018	'19.4월	5월	6월	7월	8월
원/달러	1,161	1,131	1,100	1,141	1,183	1,176	1,175	1,209
원/엔(100엔)	1,068	1,009	996	1,022	1,076	1,088	1,086	1,137
원/위안	174.4	167.5	166.4	169.8	172.1	170.0	170.9	171.0
원/유로	1,283	1,276	1,299	1,282	1,324	1,327	1,319	1,346
유가(Dubai)	53.8	53.2	69.7	70.9	69.3	61.8	63.3	59.1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2018	'19.4월	5월	6월	7월	8월
산업생산	3.0	2.5	1.4	0.7	1.3	-0.8	0.5	-
소매판매	3.9	1.9	4.3	1.4	3.4	1.2	-0.3	-
설비투자	-1.3	14.1	-3.8	-6.9	-10.0	-9.0	-4.7	-
수출	-5.9	15.8	5.4	-2.1	-9.8	-13.8	-11.0	-13.6
수입	-6.9	17.8	11.9	2.8	-1.9	-10.9	-2.7	-4.2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